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30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4구합190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 시장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886,540원, 지방교육세 11,187,430원, 농어촌특별세 5,093,110원의 각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러지 가공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12. 10. 10. 설립된 회사로, 그 무렵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창성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25 m<sup>2</sup> 외 13필지 및 같은 동 1820 지상 공장건물 1동(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간음하기로 하고, 2012.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2. 10. 1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성,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성,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단,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2. 8. 30.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3,000,000원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은행 주식회사 지분의 위 근저당권을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성,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성, 근저당권자 ■■공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은행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제1, 2차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REDACTED] 저축은행이 2012. 12. 27. 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1. 18.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REDACTED] 니 [REDACTED] 주식회사가 2013. 5. 3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쳤다. [REDACTED] 니 [REDACTED] 주식회사는 2013.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28,426,000원에 경락받았다.

바.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121,886,540원, 지방교육세 11,187,430원, 농어촌특별세 5,093,1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2.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EDACTED] 공단에게 5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지원예정통보를 받았고, [REDACTED] 니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슬러지분리기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3. 3. 27. 제1, 2차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REDACTED] 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1,79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합의하면서 이행증거금으로 4,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저축은행이 위 합의를 위반하여 [REDACTED] 니 [REDACTE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  
건 쳐분은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  
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  
후, 주식회사 [REDACTED] 저축은행은 2013. 1. 18. 제1, 2차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  
전등기를 마치고,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2.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제2회 매각기일  
에 1,795,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확약하며, 갑(주식회사 [REDACTED] 저축은행, 이하 같  
다)과 을은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협약하기로 합의한다.

하나, 을은 이 합의서 작성시 이행증거금으로 4,200,000원을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둘, 갑은 상기 금액 수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정된 매각기일(2013. 4. 1.)의 연기신청서를 작  
성하여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연기여부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연기 불허가시 갑이 수령  
한 이행증거금은 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셋째, 이 사건이 연기될 시 을은 2013. 4. 21. 추가로 이행증거금 4,200,000원을 2차로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3. 을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상기 금액 이하로 참가할 경우 예치된 상기 이행증거금은  
갑이 위약벌로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 합의서 관련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의 대출채권에 전액 충  
당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을은 향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기로 확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을이나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예치된 이행증거금은 을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2013. 6. 28. 주식회사 [REDACTED]이 [REDACTED]로부터 고철파쇄기를 1,306,569,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REDACTED]이 [REDACTED]에게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REDACTED] 니 [REDACTED] 주식회사가 2013.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28,426,000원에 경락받았다.

#### 라. 판단

#####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이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각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내부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한 부담 및 이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위험을 계속 안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1, 2차 각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 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그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REDACTED] 서축은행과 사이에 2013. 3. 27. 체결한 합의와 달리 위 임의경매절차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30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 관계 법령

### ■ 구 지방세(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